

'86不正·不良食品 指導 團束指針

-보건사회부위생감시과제공-

1. 目 的

4部合同團束의 基本趣旨에 의하여 不正·不良食品의 發生을 根源的으로 封鎖, 優秀한 食品의 供給으로 國民保健向上 및 '86,'88國 際行事에 對備.

2. 基本方向

- 不正·不良食品 發生要因의 源泉的 除去
 - 優秀한 固有의 傳統食品 開發誘導
 - 製造施設과 原料 및 製造工程 重點點檢
 - 脆弱業所, 問題食品 重點指導
 - 流通食品의 徹底한 管理
 - 違反業所에 대한 行政制裁 強化
 - 無許可 製造業所 拔本塞源
- 弘報 및 教育強化
 - 製造業者 및 從事者의 食品에 관한 使命意 識 鼓吹 教育
 - 學生中心 弘報로 申告意識 誘導
 - 不正·不良食品 識別方法 弘報
 - 고발신고센터 運營 活性化

3. 指導團束計劃

가. 不正·不良食品의 持續的 合同團束 實施

- '85. 9示達된 不正·不良食品 合同團束 計劃에 의거 持續的으로 團束하되 5個 基本食品 外에 國民多消費食品까지 擴大하여 合同團束 強化

○重點 團束對象 食品

- 基本食品: 두부, 절임食品, 食用油, 魚肉 軟製品, 醬類.
- 國民多消費食品: 과자類, 면類, 清涼類, 菓 菜類 등 飲料, 乳加工製品

○新設되는 常設機動監視班을 精銳化하여 監視의 敏捷化 圖謀

○'85合同團束結果 도출된 問題點 補完

- 中央合同團束班은 市·道의 合同團束實態를 確認 指導·監督
- 市·道는 市·郡·區廳의 合同團束實態를 確 認 點檢하고 團束結果 每月 評價 分析 實施
- 合同團束對象에 있어 製造業所와 流通食品에 均衡을 두어 團束
- 大都市 등의 脆弱地域 重點 合同團束 強化
- 不正·不良食品 告發事項에 대한 迅速한 措 置 등

나. 製造業所 指導·點檢

基本方針

- 食品製造許可業所로 하여금 優秀한 固有의 傳統食品 開發 誘導
- 原料 및 製造工程 重點指導로 品質管理 強化
- 衛生施設 및 衛行管理人의 製品管理狀態 確認
- 表示基準 違反 및 誇大廣告 行爲 등 監視
- 製品 收去檢査 및 管理臺帳 整理 徹底
- 善良한 製造業所에 대하여는 指導育成하 고 故意的 不正·不良食品 製造業者 嚴罰
 - 일벌백계로 許可取消 및 法廷最高刑措 置

- 違反業所 名單公開
- 低所得層이 生計手段으로 各 家庭에서 製造한 在來式 食品을 만들어 市販하는 것은 이를 止揚토록 指導·啓蒙
- 違反業所 行政處分 履行與否 確認

1) 點檢對象

- 4部 合同團束 對象 製造業所: 中央 市·道, 市·郡·區 合同團束
 - 基本食品 5個業種
 - 國民 多消費食品 業種
- 許可 官署別 團束對象 製造業所
 - 4部 合同團束對象에서 除外된 製造業所는 許可官署別로 點檢
 - * 단, 農水産部에서 保社部로 移管된 業種은 中央에서 點檢

2) 點檢方法

- 必要時 國立保健院, 市·道 保健研究所와 合同點檢 및 技術指導
- 中央 및 市·道計劃은 그 實情과 人力을 勘案하여 自體計劃을 樹立 實施
- 日日點檢目標: 2個業所 以上
- 輕微한 事項에 대하여는 食品衛生管理人 및 從事者에게 點檢時 現地 指導啓蒙

3) 重點 點檢事項

- 施設調査
 - 食品衛生法施行規則 第24條 “別表9” 業種別 施設基準
- 原料 및 製造工程點檢
 - 使用原料가 食品衛生法 第3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適正與否
 - 腐敗, 變質, 未熟한 原料 使用與否(必要時 檢定結果로 判定)
 - 有害, 有毒物質의 含有 또는 附着與否 (必要時 檢定結果로 判定)
 - 病原性 微生物에 汚染與否
 - 不潔, 異物質 混入與否
 - 病肉, 廢肉의 使用與否
 - 非指定 添加物 使用與否
 - 原料의 衛生的 保管與否 等

- 製品의 許可工程에 의한 製造加工與否
- 機械, 器具의 衛生的 洗滌與否 및 保存 狀態
- 原料配合에서 完製品이 되기까지의 各 製造工程의 適正與否
- 製造機械 및 包裝容器의 衛生的 管理與否
- 食品衛生管理人의 品質管理與否(原料臺帳, 自家試驗 實施與否)
- 原料 및 製品에 대한 表示基準違反, 誇大廣告行爲 與否 等

4) 特別點檢

- 情報, 告發, 多發民願 및 指示事項 等은 豫告없이 隨時實施

5) 點檢對象 除外

-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業所는 定期點檢 對象에서 除外할 수 있음.
 - '86.1.1 以後 新規許可業所
 - '86.1.1 以後 場所移轉 許可業所-
 - 場所移轉 事由의 休業業所
 - 休業中인 業所(原料 및 製造工程 調査에 한함)
 - 銀行債務 不履行으로 그 管理權을 銀行이 所有한 業所로서 休業狀態 業所
 - 國稅, 地方稅 滯納處分으로 國家 또는 自治團體에 製造施設 等이 差押 또는 押留된 業所

6) 其他事項

- 底所得層이 生計手段으로 無許可·自家製造한 在來式 食品을 만드는 것은 이를 止揚토록 指導·啓蒙
- 在來의 맛이나 生活習慣때문에 自家生産販賣가 盛行하는 것은 許可業所에서도 消費者의 구미에 맞는 在來의 自家製品과 같은 맛을 내도록 品質을 向上시켜 消費者가 許可製品만을 찾도록 誘導

다. 脆弱地(業所) 流通食品重點 指導管理

- 不正·不良食品의 流通이 豫想되는 市場周邊, 學校周邊, 低所得層 住居地域, 遊園地

周邊 등에서 腐敗變質, 無表示食品, 即席調理食品 등의 取扱이 可能한 地域의 販賣業所를 脆弱業所(地域)로 指定 重點管理.

○推進責任者 指定管理

- 市·郡·區廳의 公務員을 脆弱地域別로 1名씩 指定
- (脆弱地域의 새마을指導者 또는 社會淨化委員 等의 協助를 받는다)

○團束對象

- 無許可 製品
- 냉차, 미숙과일 등 腐敗, 變質食品 等
- 表示不良, 無表示品 等
- 其他 不良食品으로 의심이 가는 食品 等

○指導團束

- 定期團束: 教育機關(指導教師), 警察署, 地域責任者와 合同으로 月 1回以上 週期的 實施
- 特別團束: 不良食品流通豫定時期(행락철, 公休日 等) 必要時 特別團束

○重點管理要領

- 脆弱業所(地域) 및 問題食品의 地域別分佈圖 및 個別카드 作成備置 管理
- * 月別로 淨化된 業所 現況把握 整理하여 完全 淨化時까지 集中斷續
- 常習的 無許可食品, 不良食品 製造, 販賣業者 追跡調査 市·道, 市·郡·區間 情報交換 및 協助
- 市中 流通製品 監視強化
 - 腐敗·變質 또는 無表示 食品 等 現場 收去廢棄

라. 表示基準 및 誇大廣告 指導團束

- 1) 食品에 대하여 消費者에게 衛生的이고 表示事項이 正確한 製品을 提供토록 하여야 하며, 虛偽 또는 誇大한 表示廣告를 하지 아니하도록 指導, 團束함.
- 2) 主要團束事項
 - 表示基準
 - 食品衛生法施行規則 第5條의 “別表2”에 規定된 事項

○誇大廣告 및 包裝

- 食品衛生法 施行規則 第6條에 規定된 事項(事實과 다르거나 消費者를 眩惑시킬 우려가 있는 內容)
 - 部分的으로 事實이라고 하더라도 全體的으로 보아 消費者의 判斷을 오도케 하는 不正確한 表示行爲 또는 誇張 表示行爲
 - 實際 使用하지 않은 材料를 使用한 것처럼 表示하는 行爲
- 例) 꿀을 使用하지 않은 製品에 “꿀떡” 名稱 使用
 - 實際 使用된 量보다 많이 包含된 것처럼 誇張表示
 - 輸入材料를 使用하지 않았음에도 不拘하고 輸入材料를 使用한 것처럼 表示
 - 輸入된 原料로 製造한 製品을 完製品이 輸入된 것처럼 表示하는 行爲
 - 內容物이 包裝容積 基準未達 與不 等

3) 指導要領

- 製造業所 定期點檢時 또는 年中 隨時 指導團束
 - TV, 라디오, 新聞, 雜誌 等を 통한 誇大廣告 等 與否
 - 시중 流通製品의 表示基準 違反 및 誇大 包裝與否
 - 民願, 陳情, 告發 및 指示事項 等에 의한 指導團束
 - 食品衛生法 施行規則 第5條 “別表2”의 改正事項 定着 誘導

마. 收去檢査

○收去對象 및 方法

- 食品·添加物, 器具容器 및 包裝 等を 流通過程과 接客業所, 製造業所 點檢時 選定收去
- 시중 流通品 隨時 收去
- 可能한 商標 등 製品包裝을 除去하여 收去하고 被收去者의 封緘 捺印하여 檢定依賴

○收去日程

-業種 및 品目別로 月別 收去計劃을 樹立 年中 收去하되 檢査能力을 判斷하여 市·道 및 市·郡·區別 收去日程 調整

○檢査項目

-規格基準 및 表示對象 添加物의 使用 및 殘存量 超過與否 等, 定期監視計劃에 의한 收去製品은 “別添” 檢體別 主要試驗項目에

정한 試驗項目만 檢査할 수 있음.

○檢査結果 不適合 製品의 措置

-酒類, 入參製品 等 他部處 許可食品은 食品衛生法 施行規則 第15條 1項에 의거 措置

-市·道 檢査結果 不適合 製品에 대하여는 즉시 保社部에 報告 및 他市·道에 通報

가공식품 제조일자 보존기간 명시 의무화

● 빵 3일, 유제품 4일, 청량음료 6개월내

86년 3월 1일부터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을 명시해야만 시판할 수 있다.

이에 따라 과자류, 어육연제품, 유산균음료, 가공유식품, 유제품, 식육제품 등 6개 종의 식품에는 반드시 제조일자와 보존기간을 연월일까지 기재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.

유통기간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과자류(빵류 및 유처리된 식품)는 3일, 유제품, 유산균 음료는 4일, 청량음료 등 12종의 식품은 통조림, 병조림을 제외하고 1~6개월 이내로 표시한다.

그러므로 소비자는 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제조일자 및 보조기간, 함량을 확인하되 날짜까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할 제품은 빵류, 기름에 튀긴 식품, 햄, 소세지, 어묵 등 식육제품 및 어육연제품, 유산균음료, 우유, 치즈, 버터 등 우유로 만든 제품이며 월까지만 표시해도 되는 제품은 다류, 청량음료, 혼합음료, 단백질식품 등과 같은 영양식품, 면류 즉석식품, 마카린, 쇼트닝, 식용유지, 통조림, 병조림 등이다.

힘모아 86대회 뜻모아 일등국민